

서울가정법원

결정

사건 [redacted] 이행명령

신청인

[redacted]

주소 [redacted]

국적 미합중국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슬기

피신청인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지 , 권효진

사건 본인

[redacted]

주 문

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[redacted] 아동반환청구 (헤이그협약) 사

건의 2021. 6. 23. 자 확정심판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 .

2.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.

이 유

피신청인은 서울가정법원 [redacted] 아동반환청구 (헤이그협약) 사건의 2021. 6. 23. 자 확정심판에 따라 사건본인들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본인들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,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.

열람용

판사 박기주



주의 :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,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3 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 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,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 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0 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.

정본입니다 .

2022 04 04

열람용

법원주사 정우성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